

부정청탁의 금지

부정청탁이란?

누구든지 /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/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/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.

■ 부정청탁 금지의 목적과 주요 내용

- 부패의 주요 요인인 연고주의·온정주의와 결부된 청탁관행을 규제
- 법상 열거된 14가지 대상직무와 관련하여 '법령을 위반하여' 또는 '지위권한을 남용하여'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으로 규정
- 부정청탁 내용의 실현여부와 무관하게 부정청탁 행위 그 자체를 금지

누구든지	공직자등 뿐 아니라 일반인도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됨
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	이해당사자가 직접 하는 부정청탁과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모두 금지
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	그 직무를 수행하는 실무자와 결재권자 및 지휘감독권자를 포함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된다	14가지 대상직무와 관련하여 '법령을 위반하여' 또는 '지위권한을 남용하여'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

부정청탁의 금지

위반행위의 제재 기준

위반행위	제재기준
직접 부정청탁을 한 자	과태료/형사상 제재 없음 (단, 공직자등의 경우는 징계처분 별도)
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	1천만원 이하 과태료
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일반인	2천만원 이하 과태료
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	3천만원 이하 과태료
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	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
공직자등은 과태료 및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처분 대상	

금품등의 수수 금지

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의 가액 기준 - 시행령 제6조, 제9조

■ 사교·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·선물등 (법 제8조제3항제2호 관련)

구분	기존	변경
음식물	3만원	3만원
선물	5만원	5만원
경조사비	10만원	5만원

(청탁금지법 2018.1.17.개정)

※ 선물(금전,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제외)

※ 선물 농수산물·가공품 포함시 10만원, 경조사비 화환·조화 포함시 10만원가능

■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(법 제10조제1항 관련)

구분	공무원, 공직유관단체 임직원	국공립학교 교직원, 언론사 임직원
시간당	40만원(직급별 구분없음)	100만원
상한액	60만원	제한없음

※ 상한액에는 강의료, 원고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(실비로 제공되는 교통비 제외)

금품등의 수수 금지

위반행위의 제재 기준



공익신고자 보호제도

공익신고 사례



- ▶ 영화 "괴물"은 2000년 '주한미군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'을 모티브로 하고 있으며,
- ▶ 이 사건은 용산 미8군 기지 영안실에서 시신처리 방부제로 사용하는 포름알데히드 470병, 223리터를 하수구에 버린 사건으로,
- ▶ 실제 이 작업을 집행했던 주한미군 군무원 김모씨의 공익신고로 세상에 알려짐.

공익신고는 보호받아야 할 용기 있는 양심

공익신고자 보호법

공익신고자 보호법(국민권익위원회, 2018.5.1. 개정·시행)

■ 공익신고의 주체

- ▶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 가능
- ▶ 반드시 근로자나 업체관계자 등 내부자로 한정하지 않음



■ 공익신고는 어디에?

국민권익위원회 

수사기관 

행정 감독기관 

공사 등 공공 단체 

국회의원 

기업의 대표자 사용자 